

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운용사항을 협의하고, 중요사항을 조사, 연구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7.09.01>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계열 또는 학과(전공)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③ 위원회에는 입학전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요강 확정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제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
3. 입학전형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업무) 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입학지원팀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7.9.25.>
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입학지원팀장이 된다.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제8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당) 위원과 간사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수당과 조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)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-18-0-4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